

청원경찰 채용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for Recruitment of Private Police Guards

Sangwoon Kim^{a,1}, Jaehun Shin^{b,*}

^a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Hayangro 13-13, Kyoungsan 38430, Republic of Korea

^b Division of Audit, Gyunggi Province, Chungsar0 1, Uijungbusi 11780,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is study has to improve the recruitment of Private Police Guards. Secure fairness on recruitment of Private Police Guards has secure excellent Private Police Guards. Under the request of requesting entity, private police guards perform police tasks at the relevant area. Recruitment takes a pivotal role because they take unusual characteristics as they perform police duties at key national institutions, unlike private security. However, problems have continuously arouse due to issues like closed recruitment, interview-based recruitment, and composition of interviewers. Accordingly, this research suggested arranging mandatory regulation to recruit publically, adaptation of physical or written exams in view of characteristics of guarding facilities, and obligating external members when consisting interviewers as solutions.

KEYWORDS

Private Police Guards
recruitment
security
Interview
Private Security

이 연구는 청원경찰의 채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로서,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수한 청원경찰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지역 내에서 경찰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민간경비와 달리 국가주요시설에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채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청원경찰의 채용은 비공개채용, 면접위주의 채용, 면접위원의 구성문제 등으로 채용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청원경찰 공개채용 의무규정 마련, 경비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체력검정 또는 필기시험 등 도입,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의무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청원경찰
채용
경비
면접시험
민간경비

© 2016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 Corresponding author. Tel. 82-10-3648-2307. Fax. 82-31-8030-4019.

Email. enfant21@naver.com

1 Tel. 82-10-2002-5616. Email. ksw48@naver.com

ARTICLE HISTORY

Received Jun. 01, 2016

Revised Jun. 10, 2016

Accepted Jun. 30, 2016

1. 서론

21세기에 들어와 많은 경찰학자들은 민간경비의 확대를 기대하면서 우리나라의 청원경찰제도는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지금까지도 청원경찰제도는 여전히 많은 기관에서 운용되고 있다. 청원경찰이 여전히 많은 기관에서 운용되는 이유는 바로 업무적인 특수성 때문이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및 사업장 또는 장소를 배치되어 경비를 하는 민간 경비경찰로서, 이 모든 지역을 경찰이 경비하기에는 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하고, 민간경비에 업무를 맡기기에는 민간인의 무기사용과 같은 신분적인 문제로 인하여 청원경찰제도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청원경찰은 민간경비와 같이 고용주의 사적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과 달리 국가주요시설 및 공공성을 가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 내에서 경비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청원경찰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청원경찰법」으로 각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채용하는데 있어서 민간경비의 채용에 비하여 까다롭게 선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선발되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 수혜대상이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 금지돼 있는 등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원경찰은 비교대상이 되는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채용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청원경찰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1월과 4월 전남 고흥군과 광양시에서 청원경찰 채용을 둘러싸고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청원경찰 채용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청원경찰의 부당한 채용관행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 청원경찰 채용한 45개 기관 중에서 18개 기관이 면접시험만으로 청원경찰을 선발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Anti-Corruption & Civil Right Commission, 2015: 1).

청원경찰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부적합한 시스템으로 청원경찰을 채용할 경우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어 청원경찰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고 중요한 문제는 청원경찰이 방어하는 국가주요시설의 방어에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의 채용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원경찰제도가 본래 도입한 취지에 맞게 국가관과 윤리관을 함께 갖춘 유능한 인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되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청원경찰채용의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청원경찰의 도입배경 및 의의

‘청원경찰제도’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청원경찰법 제2조)을 배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1)은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된 유사 민간경비제도 내지 준 경찰제도로 할 수 있다(Kim Yang-hyun, 2010: 55).

이러한 준 경찰제도라고도 할 수 있는 청원경찰제도의 도입배경은 1960년대 초반의 국가주도형 경제개발이 본격화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주도형 경제개발의 영향으로 경비를 필요로 하는 산업시설, 공장, 금융기관 등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 남북 간에 형성된 첨예한 대립상황은 이러한 산업시설에 대한 경비를 단순히 범죄피해로부터의 예방, 즉 ‘방범’(防犯: Crime Prevention)이 아닌 적대세력으로 부터의 시설파괴에 대한 ‘방호’(防護: Defense)의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Kim Yang-hyun, 2010: 56).

이 제도는 1962년 4월 3일 법률 제1049호로 제정되어 1973년 12월 31일 법률 제2666호로 전면 개정된 「청원경찰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청원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진 준경찰제도 또는 민간경찰제도가 할 수 있다(Lee Min-Hyung, 2012: 234).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입법당시 신분을 공무원으로 하였으나 이후 청원경찰법 개정으로 민간인신분으로 전환되었다. 청원경찰은 민간인 신분이면서 근무구역 내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경비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원경찰은 순수 민간에 의한 치안조직이기 보다는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혼합되어 있는 혼성적 치안조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Lee Sun-Je, 2006: 13).

청원경찰은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관의 직무(「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범죄의 예방·진압, 경비·대간첩작전의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Kim Jong-Min, 2011: 5)

다시 말해, 청원경찰은 공경비인 경찰의 업무와 민간인 신분의 민간경비와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경비와 달리 공적인 성격을 가진 정부기관 및 기업체인 국가주요시설에서 제복을 착용하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해당기관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신분의 경비경찰이다.

2.2 청원경찰에 대한 선행연구

청원경찰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로 그 연구 성과가 많지 않아 대부분의 연구는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의 비교에 관한 연구, 특수경비원 제도와 청원경찰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청원경찰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청원경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계원과 서진석의 연구(2015)는 민간경비원 권리보호 규정의 경비업법 수용제고 방안이라는 연구에서 청원경찰의 권리보호 조항과의 비교를 통해 경비원의 권리보호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즉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조항의 신설과 경비원의 권한범위의 규정, 경비원의 의무규정과 물리력의 범위 명확화, 경비원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김양현의 연구(2010)에서는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원제도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원제도의 업무중복과 신분보장, 보수, 처우의 불평등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원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배완의 연구(2010)에서는 민간경비 직무에 관한 청원경찰법상 제도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제도의 비교 연구에서 청원경찰과 특수경비가 일반경비에 비해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와 방호를 전담하며 범죄예방 및 진압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수경비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청원경찰의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한 청원경찰의 폐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 하면서 국가중요시설 경비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청원경찰법과 특수경비제도를 통합하거나 조정하여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경비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한승훈과 김용근의 연구에서(2015)는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따른 권한과 의무라는 연구에서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명시된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를 밝히고, 법적의무를 고찰함으로써 실정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의 국가배상 회피,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는 징계규정의 위헌성, 경찰과의 직무협력관계에 대한 규정의 미비, 노동쟁의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보수의 2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청원경찰의 임용자격과 방식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청원경찰과 관련한 연구는 그 직무특성상 민간경비의 업무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분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으로 업무의 세분화가 이루어지면서 특수경비와의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그 통합화 방안을 연구한 분야, 그리고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을 비교하면서 민간경비의 직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연구, 청원경찰과 경찰과의 직무 및 권한 비교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임용이나 채용에 관한 구체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3 청원경찰의 채용

청원경찰의 채용은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를 통하여 청원경찰을 채용하고 있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시력(교정

시력 포함)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과거에는 신장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장 및 체중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신체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를 대상자로 한다.

그러나, 「청원경찰법」을 비롯한 청원경찰 관련법에는 채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다른 공무원채용과 같이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채용을 청원주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을 하면에 있어서 시험 종류에 대한 규정 및 채용 공고 기간, 채용정원 등 채용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3. 현재 청원경찰채용상의 문제점

3.1 청원경찰 인원현황

청원경찰의 실태를 살펴보면 총 1,723개의 시설에 12,96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가기관에서 청원경찰을 운용하고 있는 기관은 343개의 기관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1,87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기관 소속의 청원경찰은 국가주요시설방호 및 경비업무, 중앙정부 청사방호 등 상시 경비해야할 시설에 대하여 청원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연금 수혜대상이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 금지돼 있는 등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등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938개 기관에서 7,384명을 고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방호 및 경비,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 등 방호업무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자산에 대한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상 청사방호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자산에 대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도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연금 수혜대상이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 금지돼 있는 등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등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다.

공기업에서는 170개 기업에서 2,168명을 고용하고 있다. 보호해야할 170개 공기업으로는 수자원공사의 각종 주요시설 및 댐·상수도원 등에 대한 경비업무, 한국전력의 주요시설 및 발전소 시설에 대한 방호업무 등을 비롯하여 각종 공기업 청사에 대한 방호 및 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적신분을 보장받지는 못하고 있으나 해당 공기업에서 규정한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보장받고 있다.

그리고 일반 민간기업 중 국가 주요시설에 포함되는 272개 기업에서 1,53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은행 및 방송국, 현금수송업체 등 국가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경비업무를 하는 것으로서, 해당기관에 대한 경비는 민간경비로 대체할 수 있지만,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을 무기사용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로 해당기관을 경비한다. 일반 민간기업에 소속된 청원경찰 역시 법적신분을 보장받지는 못하고 있으나 해당 공기업에서 규정한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보장받고 있다.

Table 1. disposition of Private Police Guards(Anti-Corruption & Civil Right Commission)

구 분	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설	인원(명)	시설	인원	시설	인원
			343	1,873	938	7,384
합 계	1,723	12,962	공기업		민간기업	
			시설	인원	시설	인원
			170	2,168	272	1,537

평균적으로 시설 당 약 8정도의 청원경찰이 해당기관을 방호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경우 5.4명,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7.9명, 공기업의 경우 12.8명, 민간기업의 경우 5.7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관의 규모에 따라 청원경찰의 수도 달라지겠지만 우리나라의 주요시설을 담당하는 청원경찰의 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원경찰의 경비능력을 양적으로 채우기 힘들다면 양질의 청원경찰을 채용하여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3.2 청원경찰 채용의 문제점

(1) 비공개 채용에 따른 부정의혹 지속 발생

현재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5조에 따라 청원주가 임용하고 있으나, 채용에 있어 공개채용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항시 부정의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자격과 임용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 청원경찰법령의 관련 규정을 보면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에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하고(「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남자는 군필자 또는 복무 면제자)으로 연령제한이 있으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 제3호),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과 양쪽 눈의 시력 0.8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이외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항시 부당한 채용이 가능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Han Seung-Hun & Kim, Yong Geun, 2015: 260). 다시 말해, 청원경찰의 채용은 겉으로 나타난 신체적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채용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Table 2. Recruit criteria of Private Police Guards in 2015

법적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용자격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4.11.19> 1.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경찰공무원과 청원경찰의 채용현황을 비교해 보면, 남자의 경우 경찰공무원은 군복무를 필하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일정한 신체조건과 체력조건을 갖추고, 전공 교과목에 대하여 엄격한 국가고시를 거쳐 일정 성적에 따라 공개채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의 채용에 대해서 명확한 절차가 없는 것은 청원경찰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Han Seung-Hun & Kim, Yong Geun, 2015: 261).

이렇듯 청원경찰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법적규정이 없는 탓에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장이나 중요시설 · 사업장의 경영자 등이 이를 악용하여 정실주의 혹은 연관주의에 의하여 단체장의 선거 보은성 인사논란 및 부정채용 의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청원경찰이 비록 공무원신분을 가지지는 않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해당지역에서는 경찰과 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경찰이나 공무원 채용만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나, 해당 법률이 없는 탓에 자격이 부족한

청원경찰이 채용되어 청원경찰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2) 면접위주 채용 등에 따른 객관성·공정성 결여

청원경찰 채용은 대부분 공개채용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많은 기관들이 응시생의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면접시험만으로 청원경찰을 선발하고 있어 양질의 청원경찰을 확보하지 못하고 청원경찰채용이 있을 때마다 객관성·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청원경찰 채용 45개 기관의 전형방법을 조사한 결과, 서류와 면접시험만으로 채용을 한 기관이 18개소(40%), 서류와 면접·체력시험만을 실시하여 채용한 기관은 13개소(29%), 서류와 면접·필기·체력시험을 모두 실시한 기관은 9개소(20%), 서류와 면접·필기시험만으로 채용한 기관은 5개소(11%)로 나타났다. 현재 청원경찰 채용과정에서는 치루는 필기시험과목은 각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청원경찰법·일반상식을 포함하고 기관에 따라 한국사·국어·민간경비론·경비업법 등을 시험치고 있는데 필기시험을 치는데 있어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관마다 시험과목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Table 3. Recruit examining of Private Police Guards in 2015 (Anti-Corruption & Civil Right Commission)

합계	서류·면접	서류·면접·체력	서류·면접·필기·체력	서류·면접·필기
45(100%)	18(40%)	13(29%)	9(20%)	5(11%)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원경찰을 채용하는데 가장 객관적으로 채용하였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전체 45개 기관 중 9개 기관밖에 되지 않아 지금까지 청원경찰 채용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루어져 우수한 청원경찰을 확보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청원경찰 채용 시 면접고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촉되는 면접위원을 전원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할 경우, 기관장의 특정인사 채용을 유도할 개연성 상존해 있기 때문에 항상 내부·외부 면접위원을 동시에 위촉해야 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위원 구성이 과반 수 이상을 위촉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관련규정이 없는 탓에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2015년에 조사된 청원경찰 채용기관의 구성형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45개 기관 중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12개 기관으로 3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mposition of member of the interview examining committee in 2015 (Anti-Corruption & Civil Right Commission)

합계	외부면접위원이 과반수 미만	내부위원만으로 구성	외부면접위원이 과반수 이상
45	8	4	33

이렇듯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하여 객관성·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나, 채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각 기관별로 채용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객관성·공정성이 계속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4. 청원경찰 채용의 개선방안

4.1 청원경찰 채용 시스템의 개선

공공기관의 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청원경찰을 선발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 공개채용 규정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공개경쟁 채용규정은 아무래도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원한 지역 내에서는 경찰과 같이 무력을 바탕으로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용과정보다는 보다 엄격한 공개경쟁 채용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경찰공무원법」 제8조를 참고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청원경찰 채용에 있어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내부위원 비율을 최소화하고, 외부위원 위촉을 의무화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군인사법」 제 54조의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3이 있는데, 이 규정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청원경찰 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협의 시 반드시 외부위원을 참여토록하고 외부위원의 비율을 규정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청원경찰 채용 시 문제점으로 지적한 시험과목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청원경찰의 경우 물리적인 활동이 많은 업무의 특성 상 경비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체력검정 또는 필기시험 등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충기를 휴대하고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므로 직무수행 지식, 체력요건, 인성 등을 갖춘 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체력검정 또는 필기 시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서류전형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경비지도사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여,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채용규정을 벤치마킹하여 근무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청원경찰 채용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통적인 기준을 세워 채용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청원경찰을 채용하는 기관의 차이로 인하여 각 기관별로 채용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채용기준을 공통으로 삼아 채용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4.2 청원경찰 채용개선 모델

이 연구에서는 양질의 청원경찰을 채용하기 위하여 경찰의 채용시스템을 바탕으로 청원경찰 채용에 맞도록 청원경찰 채용 개선 모델을 제안해 본다.

우선 청원경찰 채용 개선 모델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경찰의 채용절차를 살펴보면,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필기시험, 신체검사, 체력시험, 면접시험, 최종합격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청원경찰채용절차는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이후에 서류전형 추가하여, 필기시험, 신체검사, 체력시험, 면접시험, 최종합격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에서는 시험실시 20일 전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일괄공고를 한 후 해당기관에 인터넷 원서접수 혹은 사이트를 이용하여 접수하도록 한다.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일괄공고 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밀실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서류전형은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과 달리 응시자의 경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원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전형을 실시하도록 한다. 서류전형 시 해당기관에 경력증명서를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 공신력 높은 신원조회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기시험은 과목과 필기시험에 대한 통일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청원경찰 필기시험의 과목은 각 기관마다 상이하고,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원경찰 채용 시 필기시험을 치는 기관의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청원경찰법·일반상식을 포함하고 기관에 따라 한국어·국어·민간경비론·경비업법 등을 시험치고 있다. 그러나 청원주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 경찰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의 특성 상 사법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법적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청원경찰의 필기시험에는 반드시 형법, 형사소송법이 포함시키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청원경찰법과 일반상식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기시험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관련 법으로 규정하여 통일이켜 청원경찰을 준비하는 응시생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체검사는 청원경찰의 업무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경찰의 신체검사 기준과 같아도 된다. 신체검사의 내용으로는 체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양쪽 0.8 이상), 색신(색신이상 이 아니어야 함), 청력(좌우 40데시벨 이하), 혈압(고혈압 또는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을 검사해야 한다. 경찰과 달리 청원경찰의 경우 개인의 취향을 고려하여 문신의 경우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에 문신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하는데 큰 문제를 삼지 않도록 한다.

체력검사는 청원경찰의 특성 상 높은 체력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찰의 기준과 같이 100m달리기(17초 이상), 1000m 달리기(280초 이상), 윗몸일으키기(21개 이상), 좌우약력(37 이상), 팔굽혀펴기(12개 이상)을 검사하도록 한다. 다만, 경찰과 달리 단계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체력수준을 통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면접시험은 개별면접(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준법성)을 실시하되 면접시험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을 3인 이상으로 하여 면접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최종합격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하도록 하며, 무도자격증이 있을 경우 가산하도록 하여 청원경찰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Table 5. Recruit improvement model of Private Police Guards

현행 청원경찰 채용절차		개선된 청원경찰 채용절차				
<table border="1"> <tr> <td>시험공고 및 원서접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공고에 대한 법적근거 없음 해당기관에서 접수 </td> </tr> </table>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공고에 대한 법적근거 없음 해당기관에서 접수 	⇒	<table border="1"> <tr> <td>시험공고 및 원서접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실시 20일전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에 일괄공고 해당기관에서 접수 </td> </tr> </table>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실시 20일전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에 일괄공고 해당기관에서 접수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공고에 대한 법적근거 없음 해당기관에서 접수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실시 20일전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에 일괄공고 해당기관에서 접수 					
↓		↓				
<table border="1"> <tr> <td>서류전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별한 규정 없이 진행됨 </td> </tr> </table>	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별한 규정 없이 진행됨 	⇒	<table border="1"> <tr> <td>서류전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기관의 기준에 의하여 서류전형 실시 해당기관의 기준은 반드시 조례 혹은 이상의 법령으로 명시하도록 함 </td> </tr> </table>	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기관의 기준에 의하여 서류전형 실시 해당기관의 기준은 반드시 조례 혹은 이상의 법령으로 명시하도록 함
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별한 규정 없이 진행됨 					
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기관의 기준에 의하여 서류전형 실시 해당기관의 기준은 반드시 조례 혹은 이상의 법령으로 명시하도록 함 					
↓		↓				
<table border="1"> <tr> <td>필기시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원경찰법, 일반상식, 민간경비론, 국어, 한국사, 경비업법 등 필기시험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모든 기관에서 행하는 것이 아님 </td> </tr> </table>	필기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원경찰법, 일반상식, 민간경비론, 국어, 한국사, 경비업법 등 필기시험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모든 기관에서 행하는 것이 아님 	⇒	<table border="1"> <tr> <td>필기시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원경찰 업무와 관련 있는 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청원경찰법, 일반상식 등 </td> </tr> </table>	필기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원경찰 업무와 관련 있는 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청원경찰법, 일반상식 등
필기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원경찰법, 일반상식, 민간경비론, 국어, 한국사, 경비업법 등 필기시험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모든 기관에서 행하는 것이 아님 					
필기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원경찰 업무와 관련 있는 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청원경찰법, 일반상식 등 					
↓		↓				
<table border="1"> <tr> <td>신체검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 : 양쪽 0.8 이상 </td> </tr> </table>	신체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 : 양쪽 0.8 이상 	⇒	<table border="1"> <tr> <td>신체검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격 :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 양쪽 0.8 이상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청력 : 좌우 40데시벨 이하 문신 : 문신이 옷으로 가려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상관하지 않음 </td> </tr> </table>	신체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격 :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 양쪽 0.8 이상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청력 : 좌우 40데시벨 이하 문신 : 문신이 옷으로 가려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상관하지 않음
신체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 : 양쪽 0.8 이상 					
신체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격 :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 양쪽 0.8 이상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청력 : 좌우 40데시벨 이하 문신 : 문신이 옷으로 가려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상관하지 않음 					
↓		↓				
<table border="1"> <tr> <td>체력검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규정 없음 </td> </tr> </table>	체력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규정 없음 	⇒	<table border="1"> <tr> <td>체력검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m달리기 : 17초 이상 1000m 달리기 : 280초 이상 윗몸일으키기 : 21개 이상 좌우약력 : 37 이상 팔굽혀펴기 : 12개 이상 총점 19점 이하 탈락 </td> </tr> </table>	체력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m달리기 : 17초 이상 1000m 달리기 : 280초 이상 윗몸일으키기 : 21개 이상 좌우약력 : 37 이상 팔굽혀펴기 : 12개 이상 총점 19점 이하 탈락
체력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규정 없음 					
체력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m달리기 : 17초 이상 1000m 달리기 : 280초 이상 윗몸일으키기 : 21개 이상 좌우약력 : 37 이상 팔굽혀펴기 : 12개 이상 총점 19점 이하 탈락 					
↓		↓				
<table border="1"> <tr> <td>면접시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서류전형과 함께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음 면접시험에 대한 규정 없음 외부심사위원에 대한 규정 없음 </td> </tr> </table>	면접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서류전형과 함께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음 면접시험에 대한 규정 없음 외부심사위원에 대한 규정 없음 	⇒	<table border="1"> <tr> <td>면접시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면접(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준법성) 외부면접위원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함 </td> </tr> </table>	면접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면접(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준법성) 외부면접위원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함
면접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서류전형과 함께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음 면접시험에 대한 규정 없음 외부심사위원에 대한 규정 없음 					
면접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면접(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준법성) 외부면접위원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함 					
↓		↓				
<table border="1"> <tr> <td>최종합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규정 없음 </td> </tr> </table>	최종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규정 없음 	⇒	<table border="1"> <tr> <td>최종합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무도자격증 소지자 가산 </td> </tr> </table>	최종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무도자격증 소지자 가산
최종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규정 없음 					
최종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무도자격증 소지자 가산 					

5. 결 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주요시설에 대하여 청원경찰제도로 경비활동을 하고 있다. 청원경찰활동은 청원주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지역 내에서 경찰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서 일반민간경비와 달리 국가주요시설을 전문적으로 경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인을 고객으로 하는 민간경비와 달리 무기사용과 같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과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고, 여러 민간경비 연구에서는 청원경찰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원경찰은 국가 주요시설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경비함으로써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해주고, 민간경비원에게 부족한 신분보장과 경비에 대한 전문성 보완, 민간인신분에서 이뤄지기 힘든 강제력을 경찰 대신 수행하기 때문에 경찰과 민간경비를 상호 보완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원경찰은 매년 채용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원경찰 채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주요시설을 경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만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지만 현재 청원경찰 채용과정은 종종 부정확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부터 지방자치단체 장의 정실주의(patronage system) 혹은 엽관주의(spoils system)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사에 의하여 채용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채용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청원경찰의 채용에 관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청원경찰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청원경찰법」의 채용시험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탓에 기관별로 채용하는 시험의 종류가 다르다. 따라서 채용시험에 대한 종류와 채용시험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면접시험의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의 비율을 정해 놓는 등의 방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채용시험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References

- Anti-Corruption & Civil Right Commission. (2015).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Rationality of Private Security Guards Recruit and Service.
- Gong Bae-Wan. (2010).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w of Police detailed and Special Security System of Private Security Law". LAW REVIEW, Vol. 38, pp. 325-347.
- Han Seung-Hun & Kim, Yong Geun. (2015). "A Review on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 from the legal statu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 Review of Korean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Vol. 44, pp. 251-276.
- Kim Key-Won & Seo Jin-Seok. (2015). "Study on the acceptance in Security Industry Act for the rights provisions of Private Security Guard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Petition Police Act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ol. 15, No. 6, pp. 65-78.
- Kim Jong-Min. (2011). 「Impact of Job Satisfaction on Expected Performance in Private Police Guards」.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degree.
- Kim Yang-hyun. (2010). "Suggestions to Combine Private Police Guard System with Special Security System".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Private Security, Vol. 16, pp. 53-71.
- Lee Min-Hyung. (2012). "The Revision measure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for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National Significant Facilities Security". Crisisonomy, Vol. 8, No. 4, pp. 231-248.
- Lee Sun-Je. (2007). 「A Study on the Reform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System」.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degree.